

● 제286회 ●
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
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19. 4. 24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수 석 전 문 위 원

【김혜련 의원 대표발의】

의안번호 564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김혜련 의원 대표발의(외 15명)
- 나. 제출일자 : 2019년 3월 29일
- 다. 회부일자 : 2019년 4월 3일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안이유

- 가. 재단 운영의 근본이 되는 정관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토록 함으로써 재단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·감시권한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에 사전보고하도록 규정함(안 제6조제3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Ⅱ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정창훈)

1 개정안의 취지

-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의 근본이 되는 정관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토록 함으로써 재단 운영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회의 견제·감시권한을 강화하고자 제안된 안임.

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-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의 근본이 되는 정관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안임.
 -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③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이에 대하여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는 해당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나, 서울시가 설립하여 운영 중인 재단법인¹⁾의 경우 해당 의무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.
 - 아래의 표는 설립의 법적 근거를 「민법」에 두는 것으로 명시한 재단의 사례임

1) 본 검토보고서에는 출연기관은 고려하지 않았음. 재단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임.

연번	조례명	해당 조항
1	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7조제2항
2	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6조제2항
3	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5조제2항
4	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5조제2항
5	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5조제2항
6	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8조제2항
7	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	제6조제2항
8	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6조제3항
9	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	제6조제2항
10	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	제5조제2항
11	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	제6조제2항
12	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6조제2항

- 위와 같이 서울시가 설립한 대부분의 재단에서 정관의 변경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동 조례 개정안이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대해 특별한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.

3 종합의견

- 개정안은 서울시특별시의회가 가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고유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는 여러 재단(서울시복지재단, 여성가족재단, 50+재단)에 같은 내용의 정관변경 사전보고의무가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,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바 해당 내용이 법률적으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재단의 조례들과의 형평과 비례를 따져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할 것임.